

---

#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안)

---



충 북 대 학 교

# CONTENTS

주요 사항 .....	01
<b>수시모집</b>	
•학생부종합전형(정원내) .....	03
•학생부종합전형(정원외) .....	05
•학생부교과전형(정원내) .....	06
•학생부교과전형(정원외) .....	09
•실기/실적전형(정원내) .....	11
<b>정시모집</b>	
•수능 및 실기/실적전형(일반) .....	14
<b>공통사항</b>	
•학생부 반영방법 .....	18
•학교폭력 반영방법 .....	22

본 기본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 시에는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안)

## I 주요 사항

### 1. 전형별 모집인원 현황

모집 시기	정원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25학년도 모집인원(명)	'26학년도 모집인원(명)	증감
수시	정원내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 전형)	467	529	62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I 전형)	321	376	55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13	13	-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980	760	-220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338	533	195
			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5	9	4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16	16	-	
	실기/실적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7	7	-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	15	15	-	
	정원외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116	116	-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41	41	-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64	64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40	20	-20
			학생부교과(만학도전형)	5	10	5
기타	기타(재외국민특별전형)	58	-	-58		
계				2,540 (77.0%)	2,570 (75.1%)	
정시	정원내	수능	수능(정시가군 일반전형)	416	409	-7
			수능(정시나군 일반전형)	291	329	38
			수능(정시가군 지역인재전형)	-	7	7
			수능(정시나군 지역인재전형)	25	78	53
			수능(정시나군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수시미충원	수시미충원	-
	실기/실적	실기/실적(정시가군 일반전형)	23	23	-	
	정원외	수능	수능(정시나군 경제배려대상자전형)	4	4	-
			수능(정시가나군 특성화고출신자전형)	수시미충원	수시미충원	-
			수능(정시가나군 농어촌학생전형)	수시미충원	수시미충원	-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정시가군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수시미충원	수시미충원	-
계				759 (23.0%)	850 (24.9%)	
합계				3,299	3,420	

※ 2026학년도 학생정원조정계획 및 국책사업 선정에 따라 전형별·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2.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구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비고
반영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과목) 중 상위 3개 등급합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과목) 중 상위 2개 등급합 반영</li> <li>※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의예과는 상위 3개 등급합 반영</li> </ul>	전형별 수능최저학력기준 세부 반영방법은 p.4, p.7~8 참조

## 3.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수학 수능 반영영역 변경(수시/정시 동일)

구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비고
수학 반영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적분, 기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li> </ul>	전형별 수능 세부 반영방법은 p.4, p.7~8, p.16~17 참조

## 4. 학교폭력 조치사항 전 대학입학전형 반영

전형유형	반영방법	비고
학생부종합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평가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반영</li> </ul>	학교폭력 조치사항 세부 반영방법은 p.22, 참조
학생부교과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 조치사항 각 호수에 따라 학생부교과성적 산출 점수에서 감점</li> </ul>	
수능위주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 조치사항 각 호수에 따라 수능성적 산출 점수에서 감점</li> </ul>	
실기/실적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 조치사항 각 호수에 따라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성적 산출 점수에서 감점하며, 정시모집은 수능성적 산출 점수에서 감점</li> </ul>	

## 5. 사회통합전형 모집비율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역인재	
모집인원	모집비율	모집인원	모집비율
332명	9.7%	627명	18.3%
①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②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③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④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⑤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⑥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⑦ 학생부교과(만학도전형) ⑧ 수능(경제배려대상자전형)		①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② 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③ 수능(정시가군 지역인재전형) ④ 수능(정시나군 지역인재전형)	

## 6. 재외국민특별전형 미선발

## II

## 수시모집

### 1. 학생부종합전형 (정원내)

가. 모집인원: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 전형) 529명,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I 전형) 376명,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13명

#### 나.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I 전형)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II 전형) 학생부종합 (sw우수인재전형)	○ 2026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 전형방법

#####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계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I 전형) 학생부종합 (sw우수인재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하지 않음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II 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

##### ○ 서류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I 전형)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II 전형) 학생부종합 (sw우수인재전형)	80점	40점	40점

※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 전형, 학생부종합 II 전형, sw우수인재전형)<적용: 전형별 선발하는 모든 모집단위>은 일괄합산전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평가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함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II전형)만 해당]

○ 반영영역

모집 계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 어	탐구			한국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과학	직업	
인문	전 모집단위	●	●	●	●	●	●	●	●	●	●
자연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	●		●	●	●		●		●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제외),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수의과대학, 바이오헬스학부	●	●	●	●	●	●		●		●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	●	●	●	●	●	●	●		●

- ※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시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이상), 한국사)에 응시하여야 함(해당 영역의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 탐구영역은 반드시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탐구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응시하여야 함(모집단위별로 지정된 탐구영역에서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2과목을 응시할 경우 상위 1과목을 반영)
-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최저학력기준 등급 함에는 미포함됨

○ 반영방법: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과목))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 충족

※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의예과의 경우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과목))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충족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인문	인문대학	전모집단위	8등급 이내	
	사회과학대학	전모집단위	7등급 이내	
	경영대학	전모집단위	8등급 이내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자연	자연과학대학	전모집단위	8등급 이내	
	공과대학	전모집단위		
	전자정보대학	전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전모집단위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수의과대학	전모집단위	8등급 이내	
	약학대학	전모집단위	7등급 이내	
	의과대학	의예과	의예과	5등급 이내
			간호학과	6등급 이내
본부직할	바이오헬스학부	8등급 이내		

※ 자연계 모집단위는 수학 필수 반영(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수학 필수 미반영)

## 2. 학생부종합전형 (정원외)

가. 모집인원: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116명

나.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 전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li> <li>1.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li> <li>2.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 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사망(실종), 이혼, 재혼 등의 경우에는 우리대학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거주요건을 별도 심사(기준은 추후 모집요강에서 안내)</li> </ul> </li> <li>※ 재학기간은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li> <li>※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학업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li> <li>※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li> <li>※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농어촌지역(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동을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인정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중 농어촌지역(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인정]</li> <li>※ 농어촌 및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특수목적고에 일부 재학한 경우 포함)는 지원자격 제외</li> <li>※ 재학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또는 주민등록말소) 기록이 있는 경우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사정대상에서 제외됨</li> </ul>

다.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계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하지 않음

○ 서류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80점	40점	40점

※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적용: 선발하는 모든 모집단위>은 일괄합산전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평가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함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 3. 학생부교과전형 [정원내]

가. 모집인원: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760명,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533명, 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9명,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16명,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61명

#### 나.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 2026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 2026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충청권(충북, 세종, 대전,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
학생부교과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 2026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충청권(충북, 세종, 대전,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 이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 2026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자는 지원 불가
학생부교과 (경제배려대상자전형)	○ 2026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전형방법

###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교과	계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경제배려대상자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하지 않음

※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교과전형, 지역인재전형,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국가보훈대상자전형, 경제배려대상자전형)<적용: 전형별 선발하는 모든 모집단위>은 일괄합산전형으로 학생부교과성적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각 호수에 따라 최고 16점 ~ 최저 1.6점 까지 개인별 학생부교과성적 산출 점수에서 감점처리함

##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 ○ 반영영역

모집 계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 어	탐구			한국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과학	직업	
인문	전 모집단위	●	●	●	●	●	●	●	●	●	●
자연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	●		●	●	●		●		●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제외),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제외), 수의과대학, 바이오헬스학부	●	●	●	●	●	●		●		●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	●	●	●	●	●	●	●		●
공통	자율전공학부	●	●	●	●	●	●	●	●	●	●

※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시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이상), 한국사)에 응시하여야 함(해당 영역의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탐구영역은 반드시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탐구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응시하여야 함(모집단위별로 지정된 탐구영역에서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2과목을 응시할 경우 상위 1과목을 반영)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최저학력기준 등급 함에는 미포함됨

○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과목))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 충족

※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의예과의 경우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과목))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충족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지역경제배려 대상자
인문	인문대학	전모집단위	8등급 이내		-
	사회과학대학	전모집단위	7등급 이내		
	경영대학	전모집단위	8등급 이내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7등급 이내		
	사범대학	전모집단위			
자연	자연과학대학	전모집단위	8등급 이내		-
	공과대학	전모집단위			
	전자정보대학	전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전모집단위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사범대학	전모집단위	7등급 이내		-
	수의과대학	전모집단위	7등급 이내	8등급 이내	-
	약학대학	전모집단위	6등급 이내	7등급 이내	8등급 이내
	의과대학	의예과	4등급 이내	5등급 이내	6등급 이내
		간호학과	6등급 이내		7등급 이내
	본부직할	바이오헬스학부	8등급 이내		-
공통	본부직할	자율전공학부	8등급 이내		-

※ 자연계 모집단위는 수학 필수 반영(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수학 필수 미반영)

○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 4. 학생부교과전형 [정원외]

가. 모집인원: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41명,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64명,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20명, 학생부교과(만학도전형) 10명

### 나.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교과 (특성화고 출신자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의 2026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대학이 지정한 모집단위별 동일 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li> <li>※ 단, 동일계열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함</li> <li>※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출신자 제외</li> </ul> </li> </ul>
학생부교과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li> </ul> </li> </ul>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li> <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li> <li>-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li> </ul> </li> <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li> <li>-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체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li> <li>-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보험 가입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li> <li>※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사실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li> <li>※ 군경력(병역법 제5조 1항 1호 및 3호에 의한 현역 보충역 의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li> </ul> </li> </ul> </li> <li>○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2026. 3. 1. 기준</li> <li>○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연·월·일까지 계산 하되 역(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li> </ul> </li> <li>○ 학생자격 유지기준: 입학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ul> </div>
학생부교과 (만학도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입학연도(2026. 3. 1.)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li> </ul>

## 다. 전형방법

###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교과	계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생부교과 (만학도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하지 않음

※ 학생부교과전형(특성화고출신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만학도전형)<적용: 전형별 선발하는 모든 모집단위>은 일괄합산전형으로 학생부교과성적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각 호수에 따라 최고 16점 ~ 최저 1.6점까지 개인별 학생부교과성적 산출 점수에서 감점처리함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 5. 실기/실적우수전형

가. 모집인원: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7명\*,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 15명  
 \*테니스(여) 1명, 소프트테니스(정구)[남] 2명(전위1, 후위1), 검도(남) 2명, 레슬링(남) 2명

### 나.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 2026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다음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테니스(여), 소프트테니스(정구)[남](전위1, 후위1), 검도(남), 레슬링(남)] 본교에서 지정하는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고교 재학 중 개인전 3위 또는 단체전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 테니스는 18세부 경기실적만 인정 ※ 소프트테니스(정구)는 선수등록 및 포지션확인서가 일치하는 경기실적만 인정
실기/실적 (실기우수자전형)	○ 2026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 전형방법

####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
		학생부		실기	특기실적	계	
		교과	출결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일괄합산	18점 (27.6%)	2점 (3.4%)	-	80점 (69%)	100점 (100%)	적용하지 않음
실기/실적 (실기우수자전형)	일괄합산	20점 (20%)	-	80점 (80%)	-	100점 (100%)	적용하지 않음

※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적용: 체육교육과>은 일괄합산전형으로 학생부(교과, 출결)과 특기실적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각 호수에 따라 최고 16점 ~ 최저 1.6점 까지 개인별 학생부교과성적 산출 점수에서 감점처리함.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적용: 조형예술학과>는 일괄합산전형으로 학생부교과성적과 실기로 점수를 산출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각 호수에 따라 최고 10점 ~ 최저 1점까지 개인별 학생부교과성적 산출 점수에서 감점처리함

#### ○ 미술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모집단위	전 공	종목	용지	배 점	비고
조형예술 학과	동양화	수묵담채정물화, 수묵담채인물화, 인체소묘 중 택 1	반절(수묵담채정물화, 수묵담채인물화) 3절 켄트지(인체소묘)	80점	4시간
	서양화	인체수채화, 인체소묘 중 택 1	3절 켄트지 (인체수채화, 인체소묘)	80점	4시간
	조 소	주제가 있는 인물소조, 모델링 인물소조, 중 택 1	-	80점	4시간

※ 최고점 80점, 기본점수 40점

○ 학생부 출결 반영방법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결석일수	~2일	3~6일	7~15일	16~30일	31일~
반영점수	2	1.5	1	0.5	0

※ 학생부의 사고(무단·미인정)에 대한 출결상황만 반영

○ 특기실적 평가방법: 최고점 80점 및 기본점수 40점으로 하고, 입상실적이 없어 반영할 성적이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

< 특기실적 평가 배점 >

- 소프트테니스(정구) / 검도 / 테니스

대회	종목	구분	등위	상위 1회 점수	추가 입상 가산점
국제 대회 및 전국 규모 대회	소프트테 니스 (정구)	복식, 단식	1위	64	1위 8점 2위 6점 3위 4점
			2위	58	
			3위	52	
		단체	1위	52	1위 4점 2위 2점
			2위	46	
			3위	40	
	검도	개인	1위	64	1위 8점 2위 6점 3위 4점
			2위	58	
			3위	52	
		단체	1위	44	1위 4점 2위 2점
			2위	38	
			3위	32	
	테니스	단식	1위	64	1위 8점 2위 6점 3위 4점
			2위	58	
			3위	52	
		복식	1위	58	1위 6점 2위 4점 3위 2점
			2위	52	
			3위	46	
단체		1위	44	1위 4점 2위 2점	
		2위	38		
		3위	32		

※ 상위 1개 대회 점수를 부여한 후, 추가 입상 가산점을 최대 2회까지 적용(총 3개 대회까지만 실적 인정)

※ 최대 80점만 점수 인정

※ 테니스는 18세부 경기실적만 인정

※ 소프트테니스(정구)는 선수등록 및 포지션확인서가 일치하는 경기실적만 인정

- 레슬링

대회		대회 구분	등위	상위 1회 점수	추가 입상 가산점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국제	구분 없음	1위	80	6점
			2위	76	
			3위	72	
	국내	A	1위	68	1위 6점 2위 4점 3위 2점
			2위	62	
			3위	56	
		B	1위	52	1위 4점 2위 2점
			2위	46	
			3위	40	

※ 상위 1개 대회 점수를 부여한 후, 추가 입상 가산점을 최대 2회까지 적용(총 3개 대회까지만 실적 인정)

※ 최대 80점만 점수 인정

< 공통 사항 >

※ 경기실적증명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장이 발행한 것이어야 함.

※ 국제대회 : '입상인정대회'가 아니라도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가대항전의 대회는 국제대회로 인정

- 단, 레슬링종목 국제대회는 UWW주관 대회만 인정

※ 전국규모대회는 매년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로 『우리대학에서 정한 체육특기자 입상 인정대회』 만 인정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 Ⅲ

## 정시모집

### 수능 및 실기/실적전형

1. 모집인원 : 수능(가군 일반전형) 409명, 수능(나군 일반전형) 329명,  
 수능(가군 지역인재전형) 7명, 수능(나군 지역인재전형) 78명,  
 수능(나군 경제배려대상자전형) 4명, 실기/실적(가군 일반전형) 23명  
 수능(나군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수시 미충원인원  
 수능(가군/나군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수시 미충원인원  
 학생부교과(가군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수시 미충원인원

- ※ 수시모집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I 전형, 학생부종합II 전형, sw우수인재전형) 및 수시모집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지역인재전형, 국가보훈대상자전형, 경제배려대상자전형)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 수능(가군/나군 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 단,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의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 수능(가군/나군 지역인재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
- ※ 수시모집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 수능(나군 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
- ※ 수시모집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 실기/실적(가군 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

### 2. 지원자격

군	전형명	지원자격
가군	수능 (일반전형)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2026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수능 (지역인재전형)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과 동일함
	실기/실적 (일반전형)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2026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수능 (특성화고출신자전형)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미충원 인원
	수능 (농어촌학생전형)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미충원 인원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미충원 인원
나군	수능 (일반전형)	○ 가군과 동일함
	수능 (지역인재전형)	○ 가군과 동일함
	수능 (경제배려대상자전형)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과 동일함
	수능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미충원 인원
	수능 (특성화고출신자전형)	○ 가군과 동일함
	수능 (농어촌학생전형)	○ 가군과 동일함

### 3. 전형방법

- 수능(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경제배려대상자전형,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실기/실적(일반전형) 반영비율

모집단위	전형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계	수능최저학력기준
			수능	실기		
인문계, 자연계, 공통계	일괄합산	+1배수	1,000점 (100%)	-	1,000점 (100%)	적용하지 않음
예체능계(조형예술,디자인)	일괄합산	1배수	500점 (44.4%)	500점 (55.6%)	1,000점 (100%)	
예체능계(체육교육과)	일괄합산	1배수	650점 (72.4%)	350점 (27.6%)	1,000점 (100%)	

- ※ 수능(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경제배려대상자전형,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적용: 전형별 선발하는 모든 모집단위>은 일괄합산전형으로 수능성적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각 호수에 따라 최고 40점 ~ 최저 4점까지 개인별 수능 성적 산출 점수에서 감점처리함. 수능(일반전형)<적용: 체육교육과>은 일괄합산전형으로 수능성적과 실기로 점수를 산출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각 호수에 따라 최고 44점 ~ 최저 4.4점까지 개인별 수능성적 산출 점수에서 감점처리함
- ※ 실기/실적(일반전형)<적용: 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은 일괄합산전형으로 수능성적과 실기로 점수를 산출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각 호수에 따라 최고 40점 ~ 최저 4점까지 개인별 수능성적 산출 점수에서 감점처리함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교과	계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하지 않음

-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적용: 지역건설공학과(농촌관광개발전공)>은 일괄합산전형으로 학생부교과성적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각 호수에 따라 최고 16점 ~ 최저 1.6점까지 개인별 학생부교과성적 산출 점수에서 감점처리함

- 미술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모집단위	전 공	종목	용지	배 점	비고
조형예술 학과	동양화	수묵담채정물화, 수묵담채인물화, 인체소묘, 인체수채화 중 택 1	반절(수묵담채정물화, 수묵담채인물화) 3절 켄트지 (인체소묘, 인체수채화)	500점	4시간
	서양화	인체수채화, 인체소묘 중 택 1	3절 켄트지 (인체수채화, 인체소묘)	500점	4시간
	조 소	주제가 있는 인물소조, 모델링 인물소조, 인체소묘 중 택 1	3절 켄트지(인체소묘)	500점	4시간
디자인학과		기초디자인	4절 켄트지	500점	4시간

- ※ 최고점 500점, 기본점수 250점

○ 체육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구분	실기종목	배점
실기	Z자 달리기	115점
	제자리 멀리뛰기	115점
	농구 레이업 슛	120점
합 계		350점

※ 최고점 350점, 기본점수 266점

4. 수능 반영방법

○ 반영영역

모집계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과학	직업	
인문	전 모집단위	●	●	●	●	●	●	●	●	●	●
자연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	●		●	●	●		●		●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제외),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제외), 수의과대학, 바이오헬스학부	●	●	●	●	●	●		●		●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	●	●	●	●	●	●	●		●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모집단위	●	●	●	●	●	●	●	●	●	●
예체능	전 모집단위	●	●				●	●	●	●	●
공통	자율전공학부	●	●	●	●	●	●	●	●	●	●

※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에 응시하여야 함

※ 탐구영역은 해당 반영 영역에서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나,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수능 성적 계산에는 미포함됨

○ 반영비율

모집계열	모집단위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인문	전 모집단위	30	20	20	30
자연	전 모집단위	20	30	20	30
예체능	전 모집단위	40	-	20	40
공통	자율전공학부	25	25	20	30

○ 반영점수 및 산출방법

－ 모집계열별 수능 반영점수

모집계열	모집단위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인문계, 자연계, 공통계	해당학과	1,000점	800점	200점
예체능계(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해당학과	500점	300점	200점
예체능계(체육교육과)	해당학과	650점	430점	220점

※ 수능 영역별 기본점수: 기본점수 총점×영역별 반영비율

※ 수능 영역별 실질반영점수: 실질반영점수 총점×영역별 반영비율

－ 점수산출 활용지표: (국어, 수학, 탐구)영역별 취득 표준점수, (영어) 절대평가 등급

－ 산출방법: 각 영역별 점수 산출방법(가산점 포함)에 의한 산출점수 합산 총점

※ 총점 산출 값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국어, 수학, 탐구 산출방법

•[영역별 기본점수 + (수능 영역별 개인 취득 표준점수<sup>1)</sup>/수능 영역별 전국최고 표준점수<sup>2)</sup>)×수능 영역별 실질반영점수]

1)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의 취득 표준점수에 대한 합계 값을 적용

2) 탐구영역은 1)에서 반영된 2과목의 전국 최고 표준점수에 대한 합계 값을 적용

－ 영어 산출방법

•[영역별 기본점수 + (수능 등급점수×수능 영역별 실질반영점수)/10]

•영어 수능등급 점수

수능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5	9	8.5	8	7.5	7	4	0

## 학생부 반영방법

## 1.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전형구분	학년별 반영비율 (%)	반영비율 (%)		교과성적반영					비교과성적반영			
	1·2·3학년	교과	비교과	반영 요소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과목별 가산점	반영 요소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경제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생부교과 (만학도전형)	100%	100%	미반영	석차등급· 이수단위/ 검정고시 합격성적	80점	40점	40점	없음	-	-	-	-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100%	88.9%	11.1%	석차등급· 이수단위	18점	2점	16점	없음	출결	2점	-	2점
실기/실적 (실기우수자전형)	100%	100%	미반영	석차등급· 이수단위/ 검정고시 합격성적	20점	10점	10점	없음	-	-	-	-

## 2. 교과성적 반영교과 및 과목 수

학년	계열	반영교과	과목수
1·2·3학년	전 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한국사 포함), 과학	해당교과 전과목

※ 검정고시 합격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검정고시 성적 반영(전 계열 공통)

※ 국외 고등학교 성적: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p.20 참조)

※ 교과별 반영과목명은 추후 모집요강에 안내

### 3. 교과성적 산출방법

#### 가. 2008년 이후 졸업(예정)자

##### ○ 교과성적 산출방법: 석차등급 활용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5	9	8.5	8	7.5	7	4	0

- 교과성적 산출은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적용
- 반영교과 중 과목석차등급이 없는 교과목[등급이 (-)로 표기된 경우 등 포함]은 교과성적을 산출하지 않음
- 단, 진로선택과목은 과목별 성취도에 따른 학생비율을 활용하여 석차등급을 산출

성취도	산출식								
A	학생비율에 관계없이 1등급 부여								
B	누적비율[(성취도 B의 학생비율 + 성취도 C의 학생비율)]에 해당하는 석차등급 부여								
C	누적비율[(성취도 C의 학생비율)]에 해당하는 석차등급 부여								
- 누적비율에 따른 석차등급									
누적비율	100.0~96.1	96.0~89.1	89.0~77.1	77.0~60.1	60.0~40.1	40.0~23.1	23.0~11.1	11.0~4.1	4.0~0.0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	9.5	9	8.5	8	7.5	7	4	0

#### 나.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 ○ 석차가 없고 평어만 있는 경우: 평어 활용

평어성적		수		우	미		양		가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5	9	8.5	8	7.5	7	4	0

- 교과성적 산출은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적용

##### ○ 석차와 평어가 있는 경우(일부학년 등 포함): 석차 활용

- 교과목석차백분율로 교과목 석차등급을 산출하고, 교과성적 산출방식에 의해 등급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교과목석차백분율 :  $\{[\text{교과목석차} + (\text{동석차 인원수} - 1) / 2] / \text{교과목재적수}\} \times 100$
- 교과목석차등급

교과목석차 백분율	4이하	4초과 11이하	11초과 23이하	23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77이하	77초과 89이하	89초과 96이하	96초과 100이하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	9.5	9	8.5	8	7.5	7	4	0

- 교과성적 산출은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적용

**다. 검정고시 출신자**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점수 반영**

검정고시성적	-	100	99~95	94~90	89~85	84~80	79~75	74~70	70미만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5	9	8.5	8	7.5	7	4	0

※ 반영과목 및 가중치

- 인문계/예체능계: 국어, 영어, 사회과목은 3.0, 수학과목은 2.0, 과학과목은 1.0
- 자연계: 수학, 영어, 과학과목은 3.0, 국어과목은 2.0, 사회과목은 1.0
- 공통계: 국어, 영어, 수학과목은 3.0, 사회, 과학과목은 1.5

- ※ 성적산출방법:  $\{(검정고시성적환산\ 등급점수 \times 가중치)\의\ 합 / (가중치의\ 합)\} \times 4 + 기본점수(40점)$   
 · 단,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의 경우  $\{(검정고시성적환산\ 등급점수 \times 가중치)\의\ 합 / (가중치의\ 합)\} \times 1 + 기본점수(10점)$ 로 검정고시성적산출

※ 최종산출 값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검정고시 출신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전형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따른 반영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감점처리함

**라. 국외 고등학교 성적 반영방법**

국외 고등학교 학생부성적	A+	A, A-	B+	B, B-	C+	C, C-	D+	D, D-	E, F
		A		B		C		D	E, F
	100~97	96.99~90	89.99~87	86.99~80	79.99~77	76.99~70	69.99~67	66.99~60	60미만
	우수				보통				미흡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	9.5	9	8.5	8	7.5	7	4	0

- ※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 (단, 성적이 없는 과목 및 시험 점수는 제외)

- ※ 단위 수가 없는 경우는 1단위로 산정

- ※ 학기와 년 단위 점수가 함께 표시된 경우 년 단위 점수를 적용

- ※ 정규학기(1학기, 2학기)만 반영(계절학기 등은 반영하지 않음)

**마. 국내 고등학교 중 1~9등급 이외의 성적 체계를 사용하는 학교의 성적 반영방법**

- 위 '라. 국외 고등학교 성적 반영방법'의 반영 기준을 적용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전형명	교과성적 산출방법	최고점수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경제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생부교과 (만학도전형)	$\{(\text{과목석차등급점수} \times \text{이수단위수}) \text{의 합} / (\text{이수단위수의 합})\} \times 4.0 + 40$	80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text{과목석차등급점수} \times \text{이수단위수}) \text{의 합} / (\text{이수단위수의 합})\} \times 1.6 + 2$	18
실기/실적 (실기우수자전형)	$\{(\text{과목석차등급점수} \times \text{이수단위수}) \text{의 합} / (\text{이수단위수의 합})\} \times 1.0 + 10$	20

※ 과목석차등급점수는 1, 2학기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이며, 이수단위수는 1, 2학기 단위수의 합

※ 교과성적을 산출한 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수시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출결 반영방법**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결석일수	~2일	3~6일	7~15일	16~30일	31일~
반영점수	2	1.5	1	0.5	0

※ 학생부의 사고(무단·미인정)에 대한 출결상황만 반영

## 학교폭력 반영방법

조치사항		(수시) 학생부종합	(수시/정시) 학생부교과	(수시) 실기/실적	(정시) 수능위주 실기/실적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반영	학생부교과성적 (총점)의 2% 감점	학생부교과성적 (실질반영점수)의 10% 감점	수능성적 (실질반영점수)의 2% 감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반영	학생부교과성적의 (총점)의 5% 감점	학생부교과성적 (실질반영점수)의 25% 감점	수능성적 (실질반영점수)의 5% 감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반영	학생부교과성적의 (총점)의 10% 감점	학생부교과성적 (실질반영점수)의 50% 감점	수능성적 (실질반영점수)의 10% 감점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반영	학생부교과성적의 (총점)의 20% 감점	학생부교과성적 (실질반영점수)의 100% 감점	수능성적 (실질반영점수)의 20% 감점
9호	퇴학처분				

※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모든 대학입학전형에서 반영하며,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 학교폭력 반영방법에 따라 전형별로 적용하는 감점수준(감점처리 최고점 및 감점처리 최저점)은 전형별 안내 참조